■ (해양경찰청) 범죄수사규칙 [별지 제184호의3 서식]

긴급응급조치 변경 확인서

대상자	성 명	()	주 민 등 록 번 호	(세)
	주 소			

본인은 경 에서 아래 항목의 긴급응급조치 내용 및 불복방법에 대해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< 긴급응급조치 내용 >

· 변경된 긴급응급조치: [□]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
[□]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

· 긴급응급조치의 보호 대상: [] 상대방 [] 상대방의 동거인 [] 상대방의 가족

· 긴급응급조치의 기간:

· 변경의 내용: (□ 긴급응급조치의 종류 변경 / □ 접근금지 기준지의 변경)

< 불복방법 >

이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위 확인인 (인)

위 대상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취소를 하면서, 위 결정 내용을 고지하였음.
(고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함)

사법경찰관 (인)